

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

의안
번호 2002~15

제출연월일 : 2002, 4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제정이유

-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함.(안 제2조)
-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·복지법인 등에 위탁·관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(안 제7조)

제정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

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거동불편노인 :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.
2.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.
3. 이용료 :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4조(운영) ①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에 운영을 위탁·관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료)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제6조(이용료의 징수방법)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
2.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
3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“별표 2”에 해당하는 자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이 용 요 금 표

거 리(권역별)	이용시간	요 금
20km(왕복 40km) 이내	3시간 미만	3,000원
"	3시간 이상 5시간 미만	5,000원
21~40km(왕복 80km) 이내	3시간 미만	5,000원
"	3시간 이상 5시간 미만	7,000원
41~50km(왕복 100km) 이내	5시간 이상	10,000원

[별표 2]
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

장 애 종 류	면 제 대 상
지 체 장 애	1. 절단장애 · 상지장애 2급1호 이상 · 하지장애 4급4호 이상 2. 지체기능장애 · 상지장애 3급1호 이상 · 하지장애 3급5호 이상 · 척추장애 5급8호 이상
뇌병변장애	1. 3급1호 장애 이상
시 각 장 애	1. 3급2호 장애 이상
청 각 장 애	1. 청력장애 3급 이상 2. 평형기능장애 4급 이상
언 어 장 애	1. 언어장애 3급 이상
정 신 지 체	1. 1급 장애 이상
정 신 장 애	1. 3급 장애 이상
발 달 장 애	1. 2급 장애 이상
신 장 장 애	1. 2급 장애 이상
심 장 장 애	1. 2급 장애 이상